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440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도 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연하(국선)
판 결 선 고 202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7.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8. 11.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4. 구속취소된 후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3.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24일 동안 매일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9.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를 통해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18.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4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24일 동안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일 지급하겠다고 2020. 12. 9.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46,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수신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투자설명자료

1. 문자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형내역 및 출소예정일자 확인보고) - 사건정보,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건정보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크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명환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2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피해자	입금일시	피해금(단위 : 원)	비고
1		2020. 12. 9.	1,000,000	
		2020. 12. 10.	3,600,000	
		2020. 12. 12.	900,000	
		2020. 12. 13.	900,000	
		2020. 12. 14.	900,000	
		2020. 12. 15.	900,000	
		2020. 12. 16.	900,000	
		2020. 12. 17.	900,000	
		2020. 12. 18.	900,000	
2		2020. 12. 9.	1,000,000	
		2020. 12. 10.	3,600,000	
		2020. 12. 12.	10,900,000	
		2020. 12. 13.	900,000	
		2020. 12. 15.	1,800,000	
		2020. 12. 16.	900,000	
		2020. 12. 17.	900,000	
		2020. 12. 18.	900,000	
		2020. 12. 11.	5,000,000	
	2020. 12. 16.	15,000,000		
3	2020. 12. 17.	2,700,000		
4	2020. 12. 17.	10,000,000		
5	2020. 12. 13.	900,000		
	2020. 12. 16.	900,000		
	2020. 12. 17.	900,000		
6	2020. 12. 18.	10,800,000		
	2020. 12. 12.	10,000,000		
	2020. 12. 14.	1,800,000		
	2020. 12. 15.	3,600,000		
	2020. 12. 17.	3,600,000		
7	2020. 12. 18.	3,600,000		
	2020. 12. 11.	10,000,000		
	2020. 12. 13.	900,000		
	2020. 12. 15.	900,000		
	2020. 12. 16.	900,000		
8	2020. 12. 18.	900,000		
	2020. 12. 18.	10,000,000		
9	2020. 12. 15.	20,000,000		
	2020. 12. 17.	900,000		
	2020. 12. 18.	900,000		
합계 금 146,000,000원				